

페이지	사유	수정전	수정후
15	신설		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2. 31.>
22	신설	<p>⑤ 민원인에게 공개(영 제1조의3 제5항)</p> <p>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i) ~ iii) 생략</p>	<p>⑤ 민원인에게 공개(영 제1조의3 제5항)</p> <p>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i) ~ iii) 생략</p> <p>iv)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 12. 31.></p>
32	개정	<p>4. 보관방법(영 제3조 제2항)</p> <p>위의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p>	<p>4. 보관방법(영 제3조 제2항)</p> <p>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p> <p>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p>

			<p>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p> <p>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개정 2023. 12. 31.></p>
	신설		<p>5.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영 제3조 제3항)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p> <p>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p> <p>2.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p> <p>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p> <p>4. 인가·허가와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인가증·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p> <p><신설 2023. 12. 31.></p>

53	단순 오류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법 제21조 제3항) <신설 2023. 12. 31.></p> <p>④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법 제21조 제3항) <개정 2023. 12. 31.></p> <p>④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21조 제4항) <신설 2023. 12. 31.></p>
57	개정	<p>(2)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영 제7조 제2항)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p>	<p>(2)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영 제7조 제2항)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22. 2. 15.></p>
70	개정	<p>(6) 사전심사신청에 대한 반려(영 제31조 제6항)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p> <p>① 해당 신청인에 대해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에 한정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p> <p>② 해당 신청인에 대한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에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p>	<p>(6) 사전심사신청에 대한 반려(영 제31조 제6항)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p> <p>① 해당 신청인에 대해 관세조사(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에 한정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p> <p>② 해당 신청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에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개정 2023. 12. 31.></p>

81	개정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영 제56조 제2항, 규칙 제9조의 3)></p> <p>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을 말한다.</p>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영 제56조 제2항, 규칙 제9조의 3)></p> <p>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을 말한다. <개정 2024. 3. 22.></p>
89	단순 오류	<p>③ 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부면제 中</p> <p>iii)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30</p>	<p>③ 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부면제 中</p> <p>iii)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10</p>
114	개정	<p>(3) 누적적 평가(영 제63조 제3항)</p> <p>무역위원회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p>	<p>(3) 누적적 평가(영 제63조 제3항)</p> <p>무역위원회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p>
123	개정	<p><잠정덤핑방지관세의 정산방법></p> <p>(1) <영 제67조 제1항 생략> 그러나 해당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 중에 소급부과될 덤핑방지관세액은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67조 제2항)</p> <p>(2) 약속의 수락시 정산 : 약속이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 덤핑률이 잠정덤핑방지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p>	<p><잠정덤핑방지관세의 정산방법></p> <p>(1) <영 제67조 제1항 생략> 그러나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부과될 덤핑방지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영 제67조 제2항)</p> <p>(2) 약속의 수락시 정산 : 약속이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p>

		<p>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영 제67조 제3항)</p>	<p>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 덤핑률을 기초로 산정한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p> <p>(영 제67조 제3항)</p>
124	개정	<p>(4) 덤핑방지관세의 산정방법</p> <p>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영 제65조)</p>	<p>(4) 덤핑방지관세의 산정방법</p> <p>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 (영 제65조) <단서 삭제> <개정 2023. 12. 31.></p> <p>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다음 각 호의자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공급자”라 한다) 2.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공급자 <p>(영 제65조 제2항)</p>

125

개정

참고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와 신규공급자의 부과〉

1.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일반적인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영 제65조 제2항)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시	조사대상기간 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중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영 제65조 제2항 단서)

2. 신규공급자

신규공급자에 대한 부과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특수관계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영 제65조 제3항)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신규공급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과 달리할 수 있다.(영 제65조 제3항 단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와 신규공급자의 부과>
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1.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4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영 제65조 제3항)

			<p>규칙 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p> <p>②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100분의 2 미만인 공급자</p> <p>2.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하여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6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p>
126	개정	<p>2. 재심사요건(영 제70조 제1항)</p> <p>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p> <p>①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 상황변동재심사</p> <p>②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p>	<p>2. 재심사요건(영 제70조 제1항)</p> <p>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p> <p>①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이하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 상황변동재심사</p>

		<p>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종료재심사</p> <p>③ 실제 덤프차액보다 덤프방기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 환급재심사</p>	<p>② 덤프방지조치의 종료로 덤프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종료재심사</p> <p>③ 실제 덤프차액보다 덤프방기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또는 약속에 따른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 -> 환급재심사</p> <p><개정 2024. 2. 29.></p>
126	개정	<p>3. 재심사절차</p> <p>덤프방기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p> <p>[재심사요청] 中</p> <p>② 신청요청시기 : 덤프방기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프방기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영 제70조 제2항)</p>	<p>3. 재심사절차</p> <p>덤프방기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p> <p>[재심사요청] 中</p> <p>② 신청요청시기 : 덤프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턴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프방지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영 제70조 제2항)</p>
126 ~ 127	개정	<p>4. 재심사결과에 대한 조치</p> <p>(1) 조치기간(영 제70조 제7항 및 제8항)</p> <p>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재심사결정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에 해당 덤프방지 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해당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p>	<p>4. 재심사결과에 대한 조치</p> <p>(1) 조치기간(영 제70조 제7항 및 제8항)</p> <p>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재심사결정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5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127	개정	<p>(3) 약속의 수정 및 덤프방지 조치(영 제70조 제10항)</p> <p>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p>	<p>(3) 약속의 수정 및 덤프방지 조치(영 제70조 제10항)</p> <p>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p>

		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시행령 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11> 붙임파일 참고 <신설 시행규칙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 붙임파일 참고	
129 ~ 130	개정	2. 부과시기와 결정 (1) 원칙 (생략)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영 제75조 제8항)	2. 부과시기와 결정 (1) 원칙 (생략)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영 제75조 제8항)
129 ~ 130 (각주)	개정	<시행령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방법)> 붙임파일 참고	
130	개정 및 단서 신설	3. 부과유효기간(법 제62조 제3항) 상계관세의 부과 또는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 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보조금 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기획재정부령으로 따로 정한 경우는 제외)	3. 부과유효기간(법 제62조 제3항) 상계조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 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단서 신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31.>
132	개정	(3) 2개국 이상이 동시 조사대상인 경우 -> 피해의 통산평가 (영 제77조 제3항)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 따른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2개국 이상이 동시 조사대상인 경우 -> 피해의 통산평가 (영 제77조 제3항)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 따른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141	개정	3. 가격기준(영 제90조 제4항) 가격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해당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30 ②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 이하인 때 : ①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	3. 가격기준(영 제90조 제4항)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해당 양허세율에 따른 관세에 다음 표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p>③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6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때 : ①+②+(기준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70)</p> <p>④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75를 초과한 때 : ①+②+③+(기준가격의 100분의 75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90)</p>	<table border="1"> <tr> <td>기준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하락률</td> <td>특별긴급관세액</td> </tr> <tr> <td>1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td> <td>기준가격 × (하락률 - 10퍼센트포인트) × 30퍼센트</td> </tr> <tr> <td>4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td> <td>기준가격 × [9퍼센트 + (하락률 - 40퍼센트포인트) × 50퍼센트]</td> </tr> <tr> <td>6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td> <td>기준가격 × [19퍼센트 + (하락률 - 60퍼센트포인트) × 70퍼센트]</td> </tr> <tr> <td>75퍼센트 초과</td> <td>기준가격 × [29.5퍼센트 + (하락률 - 75퍼센트포인트) × 90퍼센트]</td> </tr> </table>	기준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하락률	특별긴급관세액	1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 (하락률 - 10퍼센트포인트) × 30퍼센트	4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 [9퍼센트 + (하락률 - 40퍼센트포인트) × 50퍼센트]	6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 [19퍼센트 + (하락률 - 60퍼센트포인트) × 70퍼센트]	75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29.5퍼센트 + (하락률 - 75퍼센트포인트) × 90퍼센트]
기준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하락률	특별긴급관세액												
1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 (하락률 - 10퍼센트포인트) × 30퍼센트												
4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 [9퍼센트 + (하락률 - 40퍼센트포인트) × 50퍼센트]												
6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 [19퍼센트 + (하락률 - 60퍼센트포인트) × 70퍼센트]												
75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29.5퍼센트 + (하락률 - 75퍼센트포인트) × 90퍼센트]												
	개정	1. 대상국가(영 제95조 제1항) 위의 규정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 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1. 대상국가(영 제95조 제1항) 위의 규정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 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151	개정	2. 대상물품(영 제95조 제2항) 관세에 관한 편익 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나 및 다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2. 대상물품(영 제95조 제2항) 편익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및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157	개정	<개정 2021. 12. 21.>	<p style="text-align: right;"><개정 2023. 12. 31.></p> <p style="text-align: center;">(표 삭제)</p>										

		<p>① 별표 관세율표 상의 기본세율, 잠정세율 ②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③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④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p> <p>※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는 그 대상이 아니다.</p>	
		<p>3.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승인</p> <p>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영 제97조)</p>	<p>3.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승인 (영 제97조)</p> <p>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②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개정 2024. 2. 29.></p>
159	개정	<p>(2) 변경고시(영 제98조 제2항)</p> <p>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p>	<p>(2) 수정 사유(영 제98조 제2항)</p> <p>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p>

		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 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 제84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3) 협약준수(영 제98조 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어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때에는 협약에 의한 기한 내에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영 제98조 제3항) 법 제8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별표 2에 따른 품목분류를 말한다.
	신설		(4) 품목분류 고시 및 수정기한(영 제98조 제4항 및 제5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4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영 제98조 제4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사유로 법 제8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 (영 제98조 제5항)
163	개정	(2) 재심사 통지기간(영 제106조 제7항) 법 제8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영 제106조 제8항)	(2) 재심사 통지기간(영 제106조 제7항) 법 제8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영 제106조 제8항)

		<p>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3항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p> <p>① (생략)</p> <p>② 법 별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대하여 사전(事前)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③ (생략)</p>	<p>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3항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p> <p>① (생략)</p> <p>② 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분류 적용기준 및 품목분류표에 대하여 사전(事前)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③ (생략)</p>
163 ~ 164	개정	<p>6. 품목분류의 적용(법 제86조 제5항)</p> <p>(1) 원칙</p> <p>세관장은 법 제241조에 따라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위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p> <p>이 경우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p> <p>(2) 예외</p> <p>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p> <p>① 변경 전 품목분류의 적용</p> <p>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p> <p>② 소급적용</p>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p>	<p>6. 품목분류의 적용(법 제86조 제5항)</p> <p>(1) 원칙</p> <p>세관장은 법 제241조에 따라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위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p> <p><후단 삭제> <개정 2023. 12. 31.></p>

		<p>적용</p> <p>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 분류가 변경된 경우</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p> <p>1)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p> <p>2)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p>	
164	개정	<p>(2) 변경사유(영 제107조)</p> <p>“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p>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p> <p>② 법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p> <p>③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p> <p>④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p> <p>⑤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p> <p>관세청장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p>	<p>(2) 변경사유(영 제107조)</p> <p>“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p>① (삭제)</p> <p>② (삭제)</p> <p>③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p> <p>④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p> <p>⑤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p> <p>관세청장은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결정이 있는 날 또는 판결이 확</p>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 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결정이 있는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177	개정	<p>3. 기본면세 범위의 예외(술·담배·향수)(규칙 제48조 제3항) 기본면세 범위에도 불구하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면세한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술</td> <td colspan="2">1병</td> <td>1리터(L)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것으로 한정한다.</td> </tr> <tr> <td rowspan="5">담배</td> <td>궐련</td> <td>200개비</td> <td rowspan="5">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td> </tr> <tr> <td>엽궐련</td> <td>50개비</td> </tr> <tr> <td rowspan="3">전자담배</td> <td>궐련형</td> <td>200개기</td> </tr> <tr> <td>니코틴용액</td> <td>20밀리터(mL)</td> </tr> <tr> <td>기타유형</td> <td>110그램</td> </tr> <tr> <td>그 밖의 담배</td> <td>250그램</td> </tr> <tr> <td>향수</td> <td colspan="2">60밀리리터(mL)</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1병		1리터(L)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것으로 한정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기	니코틴용액	20밀리터(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60밀리리터(mL)			<p>3. 기본면세범위의 예외 (술, 담배, 향수)(규칙 제48조 제3항) 기본면세범위에도 불구하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면세한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술</td> <td colspan="2">2병</td> <td>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ℓ)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td> </tr> <tr> <td rowspan="5">담배</td> <td>궐련</td> <td>200개비</td> <td rowspan="5">2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td> </tr> <tr> <td>엽궐련</td> <td>50개비</td> </tr> <tr> <td rowspan="3">전자담배</td> <td>궐련형</td> <td>200개기</td> </tr> <tr> <td>니코틴용액</td> <td>20밀리리터(ml)</td> </tr> <tr> <td>기타유형</td> <td>110그램</td> </tr> <tr> <td>그 밖의 담배</td> <td>250그램</td> </tr> <tr> <td>향수</td> <td colspan="2">100밀리리터(ml)</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ℓ)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2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100밀리리터(ml)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1병		1리터(L)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것으로 한정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기																																																					
		니코틴용액		20밀리터(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60밀리리터(mL)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ℓ)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2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100밀리리터(ml)																																																								
214	개정	1. 중복조사의 금지(법 제111조 제2항) 中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1. 중복조사의 금지(법 제111조 제2항) 中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p>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p> <p>①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p>	<p>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p> <p>①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p> <p><개정 2023. 12. 31.></p>
221	단순 오류	<p>3. 명단공개예외(법 제116조의2 제1항 단서) 중 (2) (생략) ...</p> <p>“채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채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영 제141조의2 제1항)</p>	<p>3. 명단공개예외(법 제116조의2 제1항 단서) 중 (2) (생략) ...</p> <p>“채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채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영 제141조의5 제1항)</p>
222	단순 오류	<p>4. 명단공개 절차 중 (2) 소명기회부여 중</p> <p>관세청장은 공개대상 채납자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4. 명단공개 절차 중 (2) 소명기회부여 중</p> <p>채납자·관세포탈범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법 제116조의2 제6항) <개정 2023. 12. 31.></p>
222	개정 및 단순 오류	<p>4. 명단공개 절차 중 (2) 소명기회부여 중</p> <p>예정자에게 채납자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채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p>	<p>4. 명단공개 절차 중 (2) 소명기회부여 중</p> <p>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채납하거나 포</p>

		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영 제141조의2 제2항)	탈한 세금의 납부추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영 제141조의5 제3항) <개정 2024. 2. 29.>
222	단순 오류	5. 명단공개방법 및 공개사항 中 채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채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연령·직업·주소, 채납액의 세목·납기 및 채납요지 등으로 하고, 채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영 제141조의2 제3항)	5. 명단공개방법 및 공개사항 中 채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채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연령·직업·주소, 채납액의 세목·납기 및 채납요지 등으로 하고, 채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영 제141조의5 제4항)
222	신설		5. 명단공개방법 및 공개사항 中 ...(생략)... (영 제141조의5 제4항)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관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관세액 등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법 제279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주소·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상호·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영 제141조의5 제5항) 관세청장이 법 제116조의2제5항에 따라 명단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1.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

			<p>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5년</p> <p>2.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p> <p>(영 제141조의5 제6항)</p> <p>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p> <p>1.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p> <p>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p> <p>(영 제141조의5 제7항)</p> <p><신설 2024. 2. 29.></p>
223	단순 오류	2. 제출대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영 제141조의4 제2항)	2. 제출대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영 제141조의7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영 제141조의4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영 제141조의7 제1항)>
		3. 신청 및 발급 (1) 신청(영 제141조의5) (이하 생략)	3. 신청 및 발급 (1) 신청(영 제141조의8) (이하 생략)
		4. 유효기간(영 제141조의6)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 및 내국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4. 유효기간(영 제141조의9)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 및 내국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영 제141조의6 제1항) 세관장은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영 제141조의6 제2항)	(영 제141조의9 제1항)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영 제141조의9 제2항)
224	단순 오류	5. 준용(영 제141조의4 제3항) (이하 생략)	5. 준용(영 제141조의7 제3항) (이하 생략) [제14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1조의7은 제141조의10으로 이동 <2023. 2. 28.>]
225	단순 오류	<고액·상습채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영 제141조의7)>	<고액·상습채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영 제141조의10)>
		1. 출국금지 요청(법 제116조의5 제1항) (생략)... (영 제141조의8 제2항)	1. 출국금지 요청(법 제116조의5 제1항) (생략)... (영 제141조의11 제2항)
226	단순 오류 및 개정	<출국금지 등의 요청(영 제141조의8 제1항)> ...(생략)... 4.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채납자 (이하 생략)	<출국금지 등의 요청(영 제141조의11 제1항)> ...(생략)... 4.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자 (이하 생략) <개정 2024. 2. 29.>
	단순 오류	<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영 제141조의9 제2항)> (이하 생략)	<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영 제141조의12 제2항)> (이하 생략)
227	신설	<신설 시행령 제141조의1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붙임파일 참고	
		XV.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요구(법 제116조의6) ...(생략)...	XV.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요구(법 제116조의6) ...(생략)...

		<p>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전송 요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다만, 제8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전송 요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다만, 제8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p> <p>법 제116조의6제11항 본문에 따라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하려는 자가 관세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7 제3호를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60조의3) <신설 2024. 3. 22.></p>
258	개정	<p>1. 의의(법 제137조의2 제1항) 中</p> <p>② 법 제241조 제1항(수출·수입·반송신고)·제2항(간이신고)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241조 제1항(수출·수입·반송신고)·제2항(간이신고)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자에 대한 검사업무</p> <p>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p>	<p>1. 의의(법 제137조의2 제1항) 中</p> <p>② 법 제241조 제1항(수출·수입·반송신고)·제2항(간이신고)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241조 제1항(수출·수입·반송신고)·제2항(간이신고)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자에 대한 검사업무</p> <p>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p> <p><개정 2023. 12. 31.></p>
283	개정	<p>1. 보세사의 자격</p> <p>(1) 원칙</p> <p>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회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법 제165조 제1항)</p>	<p>1. 보세사의 자격</p> <p>(1) 원칙</p> <p>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회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법 제165조 제1항)</p> <p><개정 2023. 12. 31.></p>
299	단순	④ 납부기한 한시적 특례(규칙 제68조의2 제3항)	④ 납부기한 한시적 특례(규칙 제68조의2 제3항)

	오류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339	오탈자	1. 유치 (1) 의의(법 제206조 제1항) 中 ② 유치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유치 (1) 의의(법 제206조 제1항) 中 ② 유치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53	단순 오류	1. 보세운송 특례(법 제220조 제2항)	1. 보세운송 특례(법 제220조의2)
	신설		① 법 제220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회사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 2. 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회사 가.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 나.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외국국적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 ② 법 제220조의2에서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환적컨테이너 2.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시행규칙 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신설 2024. 3. 22.>
377	오탈자	5. 준용 (법 제233조의2 제5항) 원산지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고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준용 (법 제233조의2 제5항) 원산지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84	오탈자	1. 의의 (생략)... ⑤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 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강제징수 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생략)...	1. 의의 (생략)... ⑤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 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생략)...
	개정	<통관의 보류(영 제24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통관의 보류(영 제24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②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24. 2. 29.>
387	단순 오류	2.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법 제249조)	2.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법 제239조)
415 ~ 416	단순 오류	4. 통관절차상의 혜택제공 (법조항 목차만 기재) (1) 통관절차상의 혜택제공(법 제255조의2 제3항) (2) 상호 조건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제공(법 제255조의2)	4. 통관절차상의 혜택제공 (법조항 목차만 기재) (1) 통관절차상의 혜택제공(법 제255조의3 제1항) (2) 상호 조건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제공(법 제255조의3)

		<p>제4항)</p> <p>5. 공인취소(법 제255조의2 제5항)</p> <p>6.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법 제255조의2 제6항)</p> <p>7. 안전관리기준 준수도의 측정 등(법 제255조의2 제7항)</p> <p>8. 공인의 유효기간(법 제255조의2 제8항)</p> <p>9. 자율평가(법 제255조의2 제9항)</p> <p>10. 보고의무(법 제255조의2 제10항)</p> <p>11. 세부사항(법 제255조의2 제11항)</p>	<p>제2항)</p> <p>5. 공인취소(법 제255조의5)</p> <p>6.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법 제255조의6)</p> <p>7. 안전관리기준 준수도의 측정 등(법 제255조의7)</p> <p>8. 공인의 유효기간(법 제255조의2 제5항)</p> <p>9. 자율평가(법 제255조의4 제2항)</p> <p>10. 보고의무(법 제255조의4 제3항)</p> <p>11. 세부사항(법 제255조의4 제4항)</p>
		<p><법 제255조의2 내지 제255조의7(통관절차상의 혜택제공)> 붙임파일 참고</p>	
417	단순 오류	<p>(조항 목차만 기재)</p> <p><준수도 측정·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영 제259조의4)></p> <p>① 준수도 측정·평가의 범위 및 대상(영 제259조의4 제1항)</p> <p>② 활용범위(영 제259조의4 제2항)</p> <p>③ 세부사항(영 제259조의4 제3항)</p>	<p>(조항 목차만 기재)</p> <p><준수도 측정·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영 제259조의6)></p> <p>① 준수도 측정·평가의 범위 및 대상(영 제259조의6 제1항)</p> <p>② 활용범위(영 제259조의6 제2항)</p> <p>③ 세부사항(영 제259조의6 제3항)</p>
420	단순 오류	<p>(4) 임기(영 제259조의7 제4항)</p> <p>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p>	<p>(4) 임기(영 제259조의7 제4항)</p> <p>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삭제)</p>
		<p>(6) 해산(영 제259조의7 제8항)</p> <p>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p>	<p>(6) (삭제)</p> <p>(7) 기타(영 제259조의7 제8항)</p> <p>(이하 생략)</p>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7) 기타(영 제259조의7 제9항) (이하 생략)	
431	신설		<p>영 제263조의3(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관세청장은 법 제264조의11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규정」 제3조에 따른 국제우편물(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배달한 우편물만 해당한다) 수취인의 성명·주소, 배송일자·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와 접속기기 및 조회일자 2. 외교부장관: 국외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최근 10년간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사람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의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3. 법무부장관: 국내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외국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및 처분내용 4. 검찰총장: 다음 각 목의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국민의 성명·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p>나.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외국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p> <p><신설 2024. 2. 29.></p>
441	단순 오류	<p>(4) 개인의 범위(법 제279조 제2항)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p> <p>⑤ 전자문서중계사업자</p>	<p>(4) 개인의 범위(법 제279조 제2항)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p> <p>⑤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p>
445	단순 오류	<p>2.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법 제268조의2) 中 (2) 전자문서 관련 그 밖의 범죄(법 제268조의2 제2항) 中 법 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한국관세정보원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p>	<p>2.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법 제268조의2) 中 (2) 전자문서 관련 그 밖의 범죄(법 제268조의2 제2항) 中 법 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p>
483	단순 오류	<p>(조항 목차만 기재)</p> <p>4. 철회(법 제326조의2 제5항)</p> <p>5. 조치(법 제326조의2 제6항)</p>	<p>(조항 목차만 기재)</p> <p>4. 철회(법 제326조의2 제4항)</p> <p>5. 조치(법 제326조의2 제5항)</p>
486	오탈자 및 단순 오류	<p>6. 기타(법 제327조의2 제6항 내지 11항) 관세정보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한다.</p>	<p>6. 기타(법 제327조의2 제6항 내지 11항) 관세정보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한다.</p>

		<p>등> (영 제285조의6) ① 과징금의 금액(영 제285조의6 제1항) 법 제327조의2제5항(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또는 제327조의3제4항(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i)의 기간에 ii)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는 1억원으로 한다. ...(생략)...</p> <p>② 가중 또는 경감(영 제285조의6 제2항)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영 제285조의6) ① 과징금의 금액(영 제285조의6 제1항) 법 제327조의3제4항(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i)의 기간에 ii)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는 1억원으로 한다. ...(생략)...</p> <p>② 가중 또는 경감(영 제285조의6 제2항)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2. 29.></p>
489	개정	<p><과징금의 납부(영 제285조의7)> ① 과징금의 통지(영 제285조의7 제1항) 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2제5항(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또는 법 제327조의3제4항(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p>	<p><과징금의 납부(영 제285조의7)> ① 과징금의 통지(영 제285조의7 제1항) 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9.> (이하 생략)</p>
	단순	3. 비밀누설 및 도용의 금지(법 제327조의4 제3항)	3. 비밀누설 및 도용의 금지(법 제327조의4 제3항)

	오류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세정보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90	개정	XV. 청문(법 제328조) 中 ⑪ 법 제327조의2 제4항 및 법 제327조의3 제3항에 따른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XV. 청문(법 제328조) 中 ⑪ 법 제327조의3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92	단순 오류	XVII.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법 제330조) 中 4. 제327조의2 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	XVII.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법 제330조) 中 4. 제327조의2 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원의 임직원
511	단순 오류	5. 기타 수출행위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4조 제4호) ① 외항선(기)에 선(기)용품의 공급	5. 기타 수출행위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4조 제4호) ①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518	단순 오류	해당 페이지 내 '6억원' 을 '8억원'으로 수정하고, ② 적용대상 목차내 내용 ㉠, ㉡을 하기와 같이 수정할 것.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받은 환급실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억원 이하일 것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8억원 이하일 것	
520	내용 추가	(3) 비적용 유예(영 제14조 제6항)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	(3) 비적용 유예(영 제14조 제6항)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

		<p>인 또는 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p> <p>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2.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법 제10조(개별환급금의 산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에 미달하게 된 때 	<p>인 또는 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p> <p>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2.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법 제10조(개별환급금의 산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에 미달하게 된 때 3.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승인을 신청하는 날까지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
529	단순 오류	4.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의 환급(영 제11조 제3항)	4.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법 제11조 제3항)
543	단순 오류	1. 의의 2년	1. 의의 5년
544	단순 오류	참고표상 환급신청기간 2년 6, 환급신청기간 2년	참고표상 환급신청기간 5년 6, 환급신청기간 5년
546	단순 오류	환급신청의 요약내용상 환급신청기간 2년	환급신청의 요약내용상 환급신청기간 년5
550	내용삭제	① 자진신고(법 제21조 제4항)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	① 자진신고(법 제21조 제4항)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

	<p>하여야 할 관세 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 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p> <p>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i) 세관장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p> <p>ii) 「관세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p> <p>iii) 「관세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2항 각 호(납세자권리현장 교부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시작한 경우</p>	<p>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 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p>
550	<p>③ 이율 아래 목차 및 내용 추가</p> <p>④ 예외적용</p>	<p>④ 예외적용</p> <p>전술한 ③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술한③ 본문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한다.</p> <p>㉠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p> <p>㉡ 「관세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p> <p>㉢ 「관세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시작한 경우</p>

550		맨아래 (4) 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지급신청 내용상 2년	맨아래 (4) 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지급신청 내용상 5년
565	단순 오류	2022년도 기출문제(p566)와 중복	<연도별 기출문제 2023년도> 붙임파일 참고